

KT기894922

<여성으로 태어난 죄>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절반은 여성들의 몫이다. 이들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임신 순간에 우연히 결정된 남녀의 성별이 한 사람의 사회 생활과 행·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KBS의 인기 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시청자들이 함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 양육하면서 사랑하게 된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아이의 효적문제로 부딪히게 된 안타까움을 다루고 있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된 지금에 와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효적에 입적시키겠다는 데서, 생모이자 지금까지 혼자 양육하고 앞으로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친권 행사가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서 주인공은 몸부림친다. 이를 보다 못해 약혼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여성계가 총동원되어 추진 중에 있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성공하기를 고대하며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오늘의 하나의 큰 사회 현상으로 미혼모의 문제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2년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3명 중 1명의 친권자가 어머니라고 한다. 80년도의 5명의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양친의 협의에 의해 자유로이 아이들의 성을 정할 수가 있어서 노란 손수건에서의 주인공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2개월 이내에 '호주제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인공의 약혼자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아이는 낙태를 강요했고 태어났는지도 몰랐으며 앞으로 양육을 책임지지 않을 사람의 효적에 입적되어 그 사람의 친권 행사에 휘둘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 운동>이다. 1990년도 정기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럽들의 거센 반발로 호주제도가 잔존하게 된 것이다.

왜 호주제와 효적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 변동은 국가에 등록해 민법 관계를 규율하는 신분 등록제이자 가족 제도이다. 여성이 혼인하면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효적에 입적토록 하여 여성이 남성의 예속적 존재로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호주제는 부계혈통만을 인정하여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초래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여아낙태를 한 결과 출생성비 불균형을 조장한다. 이미 남자 어린이에 비해 여자 어린이의 수

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아버지 성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현행 제도로 이혼 또는 재혼 가족의 아이들의 성(姓) 문제 등을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개는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게 되는데 재혼하는 경우 아이들의 성문제가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 가족제도에 폐해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호주제로는 우리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과 2001년에 걸쳐 유엔 인권규약감시기구에서도 시정을 권고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호주제는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 침해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고양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천황제의 영향으로 식민지 시절 우리 나라에 이식된 제도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폐기된 제도이다. 일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성계와 여성부에서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 기획단>을 발족하였고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호주제 폐지의 핵심은 남성인 가장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가족의 패라다임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가족으로 변화시키고 호주제도로 인하여 더 이상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가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가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잠 신의 잠재력 발휘를 못하는 여성은 물론 능력 이상의 활동을 강요 당하는 남성들의 부담감도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성도 전업주부(夫)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도가 실생활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11

여성으로 태어난 '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구를 떠 났치고 있는 힘의 절반은 여성들의 몫이다. 이들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임신 순간에 우연히 결정된 남여의 성별이 한 사람의 사회생활과 행·불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 사람 우리가 사회 생활에는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피노키오를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KBS의 인기 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시청자들이 한결 가슴이 따뜻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러한 소재의 리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비록 모두가 이기를 넘어 양육하면서 사랑하게 된 남자를 곁으로 하는 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과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딪치게 된 안락제임을 다루고 있다.

아이가 다섯살이 된 지점에 와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행복에 입각시켜야 하는 데서 생모이자 지극히 큰 호자 양육하고 원으로도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친권행사가 전혀 기능하지 않음에서 주인공은 불우임 된다. 이를 보지 못해 양육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안락제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는 현재 여성에게 종동근로에 후진층에 있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성공하기를 고대하며 시간을 살피는 심산인 것이다.

오늘의 리는 큰 사회 현상으로 리호문의 문제가 뜨겁고 있다. 리호문의 경우 1992년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3명 중 1명의 친권자가 어머니라고 한다. 80년으로 5명 중의 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증가 추세에 있거나 하는 것은 국지적일 뿐이다. 그러나 비록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는 양친의 합의에 의해 잔류로 아이들의 성을 정할 수가 있어서 노란 손수건에서의 주인공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2개 주연이 '호주제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양육은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아이는 수태를 강요했고 태어났는지로 몰락하며 앞으로 양육을 책임지려 함을 사람의 책에 입각하여 2사람의 친권행사에 후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당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운동>이다. 1990년 3월 31일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우리들의 기원대로 호주제도가 잔존하게 된 것이다.

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폐지되어야 하는가? 호주제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개인의 신분행위를 국가에 등록해 민법관계를 구별하는 신분등록제이자 가족제도이다. 여성이 혼인하면 남편 대를 이어버리게 호주인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여 여성이 남편의 계속적 존재로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호주제도 부제형호당을 인격화하여 여성이 불평등한 지위를 초래하고 남이사회성을 부추겨 여아낙태를 한 결과 출생성비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러 남이사회성이기에 이러 여아낙태이더 수가 적으것이 현상이다.

이러기 됴은 강제로 대가족을 호행제로로 이호 단호 재혼가족의 아이들의 성(性) 문제등을 야기되거 심각한 사회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대개는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담당하게 되는데 재혼하는 경우 아이들의 성문제에 아이들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 가족제로에 패해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난 1991년과 2001년에 걸쳐 유엔 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기함 인권과 한 강태에서 우리나라의 호주제도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이들내지는 이미 패해가 되고 있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헌정제의 영향으로 식민지 시절 우리 나라에 이식된 제로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인화위원회에서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바 있다. 이러한 사회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여성에게만 여성에게만 사회인체적 향상이 없게 함에라는 <호주제 패해지 특별기회단>을 발족하였고 국회에서는 다의입법으로 호주제 패해지 위한 입법제정안이 제출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사회정신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호주제 패해지 향상은 남성이 가족을 이끄는 권총가족의 패해지임을 가질수있고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가족으로 변형시키고 호주제도로 인하여 더이상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가족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양성의 사회성 또는 스튜어드ship은 '여성이 사회성 책임을 받는 것은 여성에게로 남성에게로 부담을지 못하게 사회인체적으로 순환가 되고 보았지. 자원의 장대적 발휘를 못하는 여성은 물론 능력이 상의 활동을 성취당하는 남성들의 부담감도 사회인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성이 권총주부(夫)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로인 양성평등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